



건강특별시, 서울시한의사회가 함께 합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Seoul Korean Medicine Association

수 신 분회장
 (경유) 사무국장
 제 목 '자보심사지침'개정 관련 회원 안내 요청

1. 한의약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2021-05-0032 (2021.5.6.)
3.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정한 '자보심사지침'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소속회원님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자보심사지침(한의 관련)'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과의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를 신설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됩니다.

※ 자보심사지침

: 기존 고시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세부사항 없이 자보진료수가만 존재하는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시행시기, 적응증 등)을 명시한 것으로, 자보진료수가 심사에 적용.

□ 첨부 : '자보심사지침' 개정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부장 윤상환 국장 김태준 처장 김석모 협조

서한의 - 제 50 호 (2021.05.07.)

우)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89 6층 / 홈페이지 : <https://skma.or.kr>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화 : (대)02-960-0811 / 팩스 02-6944-8075 / E-mail : skma@skma.or.kr

자보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정한 「자보심사지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23호(2021. 4. 23.)

*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1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 아 래 -

■ 자보심사지침이란?

- 기존 고시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세부사항없이 자보진료수가만 존재하는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시행시기, 적응증 등)을 명시한 것으로, 자보 진료수가 심사에 적용.

■ 자보심사지침(한의 관련)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 (신설)

I. 행위 (한의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비고 (관련 고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항 목	제 목	내 용	
허-2-1 한방 물리요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악화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 2. 치료기간 :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사고 당)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	사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35호 '09.8.1. 시행)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신설)

I. 행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장 기본진료료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가-8 협의 진찰료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	<p>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21-73호(행위), 2021.3.5.시행)에 의거 산정하되, 동일날 동일상병에 통증 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복(유사)진료 범주는 다음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의과</th> <th colspan="2">한의과</th> </tr> <tr> <th>분류코드</th> <th>분류명칭</th> <th>분류코드</th> <th>분류명칭</th> </tr> </thead> <tbody> <tr> <td>MM010</td> <td>표층열치료</td> <td>40700</td> <td>경피경근온열요법</td> </tr> <tr> <td>MM020</td> <td>심층열치료</td> <td>93023</td> <td>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 요법</td> </tr> <tr> <td>MM011</td> <td>한냉치료</td> <td>40702</td> <td>경피경근한냉요법</td> </tr> <tr> <td>MM070</td> <td>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td> <td>93026</td> <td>경피전기자극요법</td> </tr> <tr> <td>MM080</td> <td>간섭파전류치료</td> <td>93027</td> <td>경근간섭저주파요법</td> </tr> <tr> <td>MM051</td> <td>경추견인</td> <td>93028</td> <td>경추견인</td> </tr> <tr> <td>MM052</td> <td>골반견인</td> <td>93029</td> <td>골반견인</td> </tr> <tr> <td>MM090</td> <td>마사지</td> <td>93032</td> <td>근건이완수기요법</td> </tr> <tr> <td>MM101</td> <td>단순운동치료</td> <td>93030</td> <td>도인운동요법</td> </tr> <tr> <td>MM102</td> <td>복합운동치료</td> <td>93030</td> <td>도인운동요법</td> </tr> <tr> <td>MM300</td> <td>적외선치료</td> <td>40701</td> <td>경피적외선조사요법</td> </tr> <tr> <td>51040</td> <td>도수치료</td> <td>40710</td> <td>추나요법(단순)</td> </tr> </tbody> </table>	의과		한의과		분류코드	분류명칭	분류코드	분류명칭	MM010	표층열치료	40700	경피경근온열요법	MM020	심층열치료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 요법	MM011	한냉치료	40702	경피경근한냉요법	MM070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	MM080	간섭파전류치료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	MM051	경추견인	93028	경추견인	MM052	골반견인	93029	골반견인	MM090	마사지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	MM101	단순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102	복합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300	적외선치료	40701	경피적외선조사요법	51040	도수치료	40710	추나요법(단순)	<p>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3호 (행위), '21.3.5. 시행)</p>
의과		한의과																																																									
분류코드	분류명칭	분류코드	분류명칭																																																								
MM010	표층열치료	40700	경피경근온열요법																																																								
MM020	심층열치료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 요법																																																								
MM011	한냉치료	40702	경피경근한냉요법																																																								
MM070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																																																								
MM080	간섭파전류치료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																																																								
MM051	경추견인	93028	경추견인																																																								
MM052	골반견인	93029	골반견인																																																								
MM090	마사지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																																																								
MM101	단순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102	복합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300	적외선치료	40701	경피적외선조사요법																																																								
51040	도수치료	40710	추나요법(단순)																																																								

■ 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응답

○ 자보심사지침 적용시기

연번	질의	답변
1	심사지침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2021.7.1.일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2	자보심사지침을 건강보험이나 산재, 실손보험에도 적용해도 되나요?	자보심사지침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위해 만든 지침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산재, 실손보험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견인치료를 염좌 및 긴장 상병에도 시행할 수 있나요?	견인치료의 적응증에 염좌 및 긴장 상병은 해당되지 않으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시행일은 언제를 의미하나요?	최초 시행일은 해당 교통사고 발생 후 최초 방문한 병원에서 처음으로 견인치료를 시행한 날을 의미합니다.
3	'사고 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발생횟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2번 발생했을 경우, 첫 번째 사고로 견인치료를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로 실시, 두 번째 사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의료기관별로 견인치료를 4주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사고 당 치료기간이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 이므로 교통사고 환자가 A, B, C 기관에서 견인치료를 각각 받았다면, 세 기관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4주 이내에서 견인치료를 인정 합니다.

○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입원중 의과 한의과 협진으로 같은날 오전, 오후에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도 중복(유사)진료에 해당되나요?	물리치료 산정지침이나 고시에서 하루 2회 가능한 항목에 한해 시행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1 -(의뢰과) 오전: 표층열 치료 *1회 시행 -(협진과) 오후: 경피경근온열요법 *1회 시행 ☞ 1일2회 산정가능 하므로 각각의 물리치료 인정 ○ 예시 2 -(의뢰과) 오전: 마사지 *1회 시행 -(협진과) 오후: 근건이완수기요법 *1회 시행 ☞ 1일당 수가로 1회 산정가능 하므로 의뢰과의 마사지만 인정

연번	질의	답변
2	시행 부위가 다를 경우 부위 별로 인정 가능한가요?	<p>물리치료 항목을 여러병변에 실시시 산정방법에 따라,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 산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2가지 이상 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 동일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더라도 외래는 1회, 입원은 2회까지만 소정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p>

- 별첨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제2021-123호)
2. 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응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2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시행)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보심사지침」 개정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한다.

- 다 음 -

1. (신설)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2.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면 개정에 따른 재활치료료 위치(‘절’) 변경

부 칙

-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1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 변경된 자보심사지침은 공고 즉시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 신설

현 행			개 정			비고 (관련 고시)
I. 행위 (의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이학요법료			I. 행위 (의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이학요법료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신설>	<신설>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u>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u>	<u>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 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교통 사고로 악화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자보 진료수가로 인정함</u>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u>1. 적 응 증: 추간관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u> <u>2. 치료기간: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 (사고 당)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u>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35호, '09.8.1 시행)

현 행			개 정			비고 (관련 고시)
I. 행위 (한의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립			I. 행위 (한의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립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허-2-1 한방물리 요법	<신설>	<신설>	허-2-1 한방물리 요법	<u>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u>	<u>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 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교통 사고로 악화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자보 진료수가로 인정함</u>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1. <u>적 응 증: 추간관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u> 2. <u>치료기간: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 (사고 당)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u>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35호, '09.8.1 시행)

현 행			개 정			
I. 행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장 기본진료료			I. 행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장 기본진료료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가-8 협의진찰료	<신설>	<신설>	가-8 협의진찰료	<u>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u>	<u>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복지부 고시 제2021-73호(행위), 2021.3.5.시행)에 의거 산정하되, 동일날 동일상병에 통증완 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루 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 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복(유사)진 료 범주는 다음과 같음</u> <u>- 다 음 -</u>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3호 (행위), ‘21.3.5. 시행)

현 행			개 정					
					의과		한의과	
					분류코드	분류명칭	분류코드	분류명칭
					MM010	표층열치료	40700	경피경근온열요법
MM020	심층열치료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MM011	한냉치료	40702	경피경근한냉요법					
MM070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 치료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					
MM080	간섭파전류 치료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					
MM051	경추견인	93028	경추견인					
MM052	골반견인	93029	골반견인					
MM090	마사지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					
MM101	단순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102	복합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300	적외선치료	40701	경피적외선 조사요법					
51040	도수치료	40710	추나요법(단순)					

2. 변경

현 행			변 경			비고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I.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I.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 보험 전면 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변경
어-4 도수치료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어-4 도수치료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 ----- ----- ----- [별표 2] 제10절 재활치료료 ----- ----- ----- - 다 음 - 가.~다. <현행과 동일>	

현 행			변 경			
		<p>에 인정함</p> <p>나. 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p> <p>다. 도수치료 시행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p> <p>※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포함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함</p>				

※ 관련 문헌(교과서, 연구논문 등)

1. 대한통증학회 저, 통증의학 5판, 군자출판사, 2018
2. 박정태 저, 임상정형외과학 개론 3판, 현문사, 2011
3. Jung Hwan Lee, MD et al., Nonsurgical treatments for patients with radicular pain from lumbosacral disc herniation, The Spine Journal, 2019
4. Jheng-Dao Yang et al., Intermittent Cervical Traction for Treating Neck Pain: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17;1;42(13)959-965
5. Myeong Soo Lee et al., Randomized Clinical Trials on Eastern-Western Integrative Medicine for Health Care in Korean Literature: A Systematic Review, Chinese J Integr Med 2011 Jan;17(1):48-51

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 · 응답

※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1-123호(2021.04.23.)관련

▣ 자보심사지침 적용시기

연번	질의	답변
1	심사지침 적용은 언제부터 인가요?	2021.7.1.일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2	자보심사지침을 건강보험이나 산재, 실손보험에도 적용해도 되나요?	자보심사지침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위해 만든 지침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산재, 실손보험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견인치료를 염좌 및 긴장 상병에도 시행할 수 있나요?	견인치료의 적응증에 염좌 및 긴장 상병은 해당 되지 않으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시행일은 언제를 의미 하나요?	최초 시행일은 해당 교통사고 발생 후 최초 방문한 병원에서 처음으로 견인치료를 시행한 날을 의미합니다.
3	‘사고 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발생횟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2번 발생했을 경우, 첫 번째 사고로 견인치료를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로 실시, 두 번째 사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의료기관별로 견인치료를 4주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사고 당 치료기간이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 이므로 교통사고 환자가 A,B,C 기관에서 견인치료를 각각 받았다면, 세 기관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4주 이내에서 견인치료를 인정 합니다.

▣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p>입원중 의과·한의과 협진으로 같은날 오전, 오후에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도 중복(유사)진료에 해당되나요?</p>	<p>물리치료 산정지침이나 고시에서 하루 2회 가능한 항목에 한해 시행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p> <p>○ 예시 1 -(의뢰과) 오전: 표층열 치료 *1회 시행 -(협진과) 오후: 경피경근온열요법 *1회 시행 ☞ 1일2회 산정가능 하므로 각각의 물리치료 인정</p> <p>○ 예시 2 -(의뢰과) 오전: 마사지 *1회 시행 -(협진과) 오후: 근건이완수기요법 *1회 시행 ☞ 1일당 수가로 1회 산정가능 하므로 의뢰과의 마사지만 인정</p>
2	<p>시행 부위가 다를 경우 부위별로 인정 가능한가요?</p>	<p>물리치료 항목을 여러병변에 실시시 산정방법에 따라,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 산정한다” 고 규정한 것은 2가지 이상 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 동일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더라도 외래는 1회, 입원은 2회까지만 소정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p>